

기업대출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(기업용), 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.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

• 상품명 : _____	• 금리적용방식 :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
• 대출신청금액 : _____ 원	• 대출기간 : 취급 후 _____ 개월
• 적용예정금리(보증료율) : _____ %	• 예상 실질유효금리 : _____ %

2. 대출이자율

- 고정금리 : 여신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. 다만,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변동금리 : 대출약정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.

※ 변동금리 예시

- CD연동금리 :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(91일물)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.
- 금융채연동금리 : KIS채권평가, 한국채권평가, 나이스채권평가가 고시하는 「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(중가(3사 평균)의 단순평균값(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)을 적용한다.
- COFIX연동금리 :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, 잔액기준 COFIX금리 또는 단기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변경됩니다.

■ 대출금리 결정(변동) 요인

-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 됩니다.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 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,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,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, 신용등급평가 조정에 의한 신용원가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- 은행의 자금조달비용

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,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.

- 신용원가

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.

*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.

- 업무원가

인건비, 물건비,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.

- 법적비용

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신용보증기금출연금,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.

-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금리인하요구권

-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(회사채 등급 상승, 재무상태 개선, 특허취득, 담보제공 등)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,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의 내부정책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: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

3. 수수료 등 비용

- 중도상환해약금 : 중도상환대출금액 x ()% x (대출잔여일수/대출기간)

- ▶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, 대출취급일로부터 ()년까지 적용합니다.
- ▶ 기업여신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기준

부동산 / 등산 담보 대출	신용 / 기타 담보 대출
1.4%	1.1%

(예시) 3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1억원을 만기 1년 전에 상환할 경우,
1억원 x 1.4% x [365(윤년은 366) ÷ 1,095(윤년은 1,096)] = 466,666원(윤년은 467,518원)

- 한도약정수수료(율) : ()%
• 한도약정수수료 =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율 x 약정기간 ÷ 365(윤년은 366일)
-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(율) : ()% , 원
- 기타수수료 : 항목() 금액 ()% , 원
- 근저당권설정비용
 - 국민주택채권매입비 : 설정금액의 10/1,000을 고객이 부담
 -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
 -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: 은행 부담
 -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고객 부담
 -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()원
- ▶ 고객과 은행이 구분하여 부담합니다.
- 인지세 : ()원
- ▶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
대출금액	인지세액
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	7만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만원
10억원 초과	35만원

- 기타비용 : 항목 () 금액 ()% , 원
-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4. 실질유효금리

-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(연율)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수수료 등 비용 중 법령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(인지세, 국민주택채권매입비), 중도상환해약금, 기타 실비성격의 일부 수수료는 실질유효이자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- 예상 실질유효금리 계산에 합산된 내역
 - 적용예정금리 : ()%
 - 한도약정수수료 : ()% , ()원
 - 한도미사용수수료(최고) : ()% , ()원
- * 한도대출 약정후 실제 사용정도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, 본 상품설명서에서는 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적용될 최고 약정한도미사용 수수료를 감안한 실질유효금리 계산 결과를 참고목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
- 취급수수료 : ()% , ()원
- 기타 (구체적으로 열거)



():()%, ()원
 ():()%, ()원
 ():()%, ()원
 ():()%, ()원

5. 이자 납입방법

-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 등)마다 이자를 납입
-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: 이자납입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,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
-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

6. 연체이자율(지연배상금률)

- 연체이자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]로 적용합니다.
 -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,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(계단방식)을 적용합니다.
 -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: 연 ()%
 -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: 연 ()%
 -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: 연 ()%
-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()%로 합니다.
-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 -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▷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 적용되고,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(예시) 원금 1억2천만원, 약정이자율 연 5%인 대출의 이자(50만원)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, 연체발생후 31일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

연체기간	계산방법	연체이자
연체발생 ~ 14일분	지체된 약정이자(50만원) × 연11%(5%+6%) × 14/365	2,109원
연체15일 ~ 30일분	원금(1억2천만원) × 연11%(5%+6%) × 16/365	578,630원
계		580,739원

*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자는 별도
 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. 연체이자자는 대출조건,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자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
-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▷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 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▷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 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(예시) 원금 1억2천만원, 분할상환 원금 매월 150만원, 약정이자율 연 5%인 대출의 분할상환 원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, 연체발생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

연체기간	계산방법	연체이자
연체발생 ~ 1개월분	지체된 분할상환 원금(150만원) × 연11%(5%+6%) × 1/12	13,750원
연체 1~2개월분	원금(1억2천만원) × 연12%(5%+7%) × 1/12	1,200,000원
계		1,213,750원

* 분할상환원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자는 별도이며, 정상이자

는 납부한 것으로 가정.
 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정상이자자는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여 원금분할상환 대출의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이자납부 유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기준이 다르게 적용(약정이자 상환기일 14일 경과시 기한 이익 상실)됨에 따라 연체이자 계산방식 및 금액이 위 예시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.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 상환원리금)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
-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 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
 - ▷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 되지 않은 경우
 - ▷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거래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 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, 그 다음 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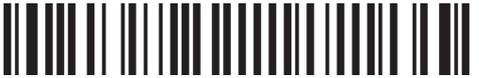
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정리는 경우에도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7. 유의사항

-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(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-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일부 발췌)
 - ◇ 기한의 이익이란?
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,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
 - ◇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?
 -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즉시 상환
 - 연체이자 부담
 -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
-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,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 부덕의 (가)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
 - ▷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더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
 - ▷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여야 합니다.
- ‘연체정보 등’ 등록
 - ▷ 대출원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‘연체정보 등’이 등록됩니다.
 - 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’ 개정으로 ‘연체정보 등’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 ‘연체정보 등’이 등록되면, 금융거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‘연체정보 등’이 등록됩니다.
 - ‘연체정보 등’이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등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이자·지연배상금 및 비용(약정이자, 중도상환수수료, 부대비용 등)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, 신용도,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필요시 개별 상품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.

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고객확인 : 20 (서명/인)



기업대출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(기업용), 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.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

• 상품명 : _____	• 금리적용방식 :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
• 대출신청금액 : _____ 원	• 대출기간 : 취급 후 _____ 개월
• 적용예정금리(보증료율) : _____ %	• 예상 실질유효금리 : _____ %

2. 대출이자율

- 고정금리 : 여신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. 다만,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변동금리 : 대출약정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.

※ 변동금리 예시

- CD연동금리 :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(91일물)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.
- 금융채연동금리 : KIS채권평가, 한국채권평가, 나이스채권평가가 고시하는 「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(중가(3사 평균)의 단순평균값(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)을 적용한다.
- COFIX연동금리 :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, 잔액기준 COFIX금리 또는 단기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변경됩니다.

■ 대출금리 결정(변동) 요인

-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 됩니다.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 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,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,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, 신용등급평가 조정에 의한 신용원가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- 은행의 자금조달비용

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,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.

- 신용원가

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.

*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.

- 업무원가

인건비, 물건비,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.

- 법적비용

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신용보증기금출연금,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.

-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금리인하요구권

-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(회사채 등급 상승, 재무상태 개선, 특허취득, 담보제공 등)에는 중병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,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의 내부정책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: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

3. 수수료 등 비용

- 중도상환해약금 : 중도상환대출금액 x ()% x (대출잔여일수/대출기간)

- ▷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, 대출취급일로부터 ()년까지 적용합니다.
- ▷ 기업여신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기준

부동산 / 등산 담보 대출	신용 / 기타 담보 대출
1.4%	1.1%

(예시) 3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1억원을 만기 1년 전에 상환할 경우,
1억원 x 1.4% x [365(윤년은 366) ÷ 1,095(윤년은 1,096)] = 466,666원(윤년은 467,518원)

- 한도약정수수료(율) : ()%
- 한도약정수수료 =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율 x 약정기간 ÷ 365(윤년은 366일)
-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(율) : ()%, 원
- 기타수수료 : 항목() 금액 ()%, 원
- 근저당권설정비용
 - 국민주택채권매입비 : 설정금액의 10/1,000을 고객이 부담
 -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
 -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: 은행 부담
 -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고객 부담
 -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()원
- ▷ 고객과 은행이 구분하여 부담합니다.
- 인지세 : ()원
- ▷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
대출금액	인지세액
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	7만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만원
10억원 초과	35만원

- 기타비용 : 항목 () 금액 ()%, 원
-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4. 실질유효금리

-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(연율)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수수료 등 비용 중 법령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(인지세, 국민주택채권매입비), 중도상환해약금, 기타 실비성격의 일부 수수료는 실질유효이자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- 예상 실질유효금리 계산에 합산된 내역
 - 적용예정금리 : ()%
 - 한도약정수수료 : ()%, ()원
 - 한도미사용수수료(최고) : ()%, ()원
- * 한도대출 약정후 실제 사용정도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, 본 상품설명서에서는 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적용될 최고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감안한 실질유효금리 계산 결과를 참고목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
- 취급수수료 : ()%, ()원
- 기타 (구체적으로 열거)



():()%, ()원
 ():()%, ()원
 ():()%, ()원
 ():()%, ()원

5. 이자 납입방법

-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 등)마다 이자를 납입
-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: 이자납입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,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
-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

6. 연체이자율(지연배상금)

- 연체이자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]로 적용합니다.
 -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,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(계단방식)을 적용합니다.
 -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: 연 ()%
 -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: 연 ()%
 -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: 연 ()%
-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()%로 합니다.
-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 -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▷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,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(예시) 원금 1억2천만원, 약정이자율 연 5%인 대출의 이자(50만원)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, 연체발생후 31일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

연체기간	계산방법	연체이자
연체발생 ~ 14일분	지체된 약정이자(50만원) × 연11%(5%+6%) × 14/365	2,109원
연체15일 ~ 30일분	원금(1억2천만원) × 연11%(5%+6%) × 16/365	578,630원
계		580,739원

*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자는 별도
 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.
 연체이자자는 대출조건,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자리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
-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▷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 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▷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 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(예시) 원금 1억2천만원, 분할상환 원금 매월 150만원, 약정이자율 연 5%인 대출의 분할상환 원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, 연체발생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

연체기간	계산방법	연체이자
연체발생 ~ 1개월분	지체된 분할상환 원금(150만원) × 연11%(5%+6%) × 1/12	13,750원
연체 1~2개월분	원금(1억2천만원) × 연12%(5%+7%) × 1/12	1,200,000원
계		1,213,750원

* 분할상환원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자는 별도이며, 정상이자

는 납부한 것으로 가정.

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정상이자자는 납부한 것으로 가정하여 원금분할상환 대출의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이자납부 유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기준이 다르게 적용(약정이자 상환기일 14일 경과시 기한 이익 상실)됨에 따라 연체이자 계산방식 및 금액이 위 예시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.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 상환원리금)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
-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 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
 - ▷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 되지 않은 경우
 - ▷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거래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 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, 그 다음 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정리는 경우에도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7. 유의사항

-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
 (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-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일부 발췌)

◇ 기한의 이익이란?

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,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

◇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?

-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즉시 상환
- 연체이자 부담
-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

-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,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 부덕의 (가)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

▷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여야 합니다.

-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더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
 - ▷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여야 합니다.

- ‘연체정보 등’ 등록

▷ 대출원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‘연체정보 등’이 등록됩니다.

- 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’ 개정으로 ‘연체정보 등’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‘연체정보 등’이 등록되면, 금융거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‘연체정보 등’이 등록됩니다.

- ‘연체정보 등’이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등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이자·지연배상금 및 비용(약정이자, 중도상환수수료, 부대비용 등)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, 신용도,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필요시 개별 상품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.

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고객확인 : 20

(서명/인)

